



제 418회 국회 (정기회)
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인요한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4053호)

2024. 11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전문위원 임 재 금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2
1.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·정원의 조성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시책 수립의무 규정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인요한의원 등 11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9. 19.

다. 회 부 일 : 2024. 9. 2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립가·임업후계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,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자연휴양림, 수목원 및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·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제공이나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함에도,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휴양림·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·운영에 관한 경영기술의 개발,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으로써,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2항).

Ⅲ. 검토의견

1.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·정원의 조성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시책 수립의무 규정

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, 수목원 및 정원에 대한 경영기술의 개발,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임업경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있음(안 제21조제2항).

현행	개정안
제21조(임업경영기반의 조성) ① (생략)	제21조(임업경영기반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가·임업후계자·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,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② 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기술의 개발----- ----- -----.
<신설>	1. 독립가·임업후계자·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
<신설>	2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

현행	개정안
③ (생략)	<u>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</u> <u>및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</u> <u>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</u> <u>른 수목원·정원의 조성·운</u> <u>영에 관한 사항</u> ③ (현행과 같음)

현행법 제21조¹⁾는 ‘임업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 제1항에서는 임업경영에 관한 책무를, 제2항에서는 임업경영주체에 대한 책무를, 제3항에서는 임업인 육성에 관한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은 최근 자연휴양림, 수목원 및 정원의 이용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조성·육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.

다만, 개정안과 같이 ‘임업’의 범주에 속하는 ‘자연휴양림, 수목원

1) 제21조(임업경영기반의 조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,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가·임업후계자·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,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, 기술 개발·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및 정원의 조성·운영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서만 별도 규정하는 방식이
현행법 체계상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즉, ‘임업’의 정의에는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
조제1호2)에 따라 자연휴양림,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·운
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현행법 제21조의 적용대상이 된다는
점을 고려할 때, 개정안과 같이 자연휴양림, 수목원 및 정원의 조
성 또는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 분리·규정하는 것
은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수목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
법 제19조3)를 개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
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연휴양림, 수목원 및 정원의 경쟁
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, 현행법 체계상 측면, 산림청의
수정의견 등을 종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423

-
- 2) 1. “임업”이란 영림업(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과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,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·운영을 포함한다), 임산물생산업, 임산물유통·가공업,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.
- 3) 제19조(수목원의 조성·운영 및 육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조성·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